

의안번호	2204154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4. 10. 29.
추계번호	24B3929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녀어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녀 및 해녀어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억원, 2030년 5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2억원(연평균 4억 4,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변동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해녀어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300	—	—	—	—	300	60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등(안 제6조)	300	—	300	—	300	900	180
해녀의 날 지정 (안 제15조)	200	200	200	200	200	1,000	200
국비	100	100	100	100	100	500	100
지방비	100	100	100	100	100	500	100
추가재정소요	800	200	500	200	500	2,200	440
국비	700	100	400	100	400	1,700	340
지방비	100	100	100	100	100	500	100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변동할 수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해녀어업의 지원 및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녀어업의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u>	의무규정
2	안 제5조(해녀어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u>(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u>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u>(제1항) 1.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녀어업의 현황 및 전망 3. 해녀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녀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해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해녀어업의 문화적 가치 전승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u>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u>(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u>수립·시행하여야 함</u>(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u>해녀 및 해녀어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함</u> .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해녀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해녀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u>(이하 “<u>해녀수당</u>”이라 함)을 <u>지급할 수 있음</u>(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최초로 해녀 자격을 취득한 40세 미만 해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u>(이하 “<u>정착지원금</u>”이라 함)을 <u>지급할 수 있음</u>(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9조(진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u>잠함병</u>(「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함) <u>및 이와 관련된 질환</u>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대하여 <u>진료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u>(제1항) 1. 해녀어업 종사기간이 5년이 경과한 사람 2. 해녀어업 종사기간이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녀이었던 사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0조(판로의 확보)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해녀어업으로 포획·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으로 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3항)	의무·재량 규정
7	안 제11조(해녀 양성 교육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u>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항)</u>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녀 양성 교육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u>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제2항)</u>	재량규정
8	안 제12조(해녀어업 및 해녀문화의 계승·발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해녀어업 및 해녀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u>해녀어업 및 해녀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u>	의무·재량 규정
9	안 제13조(해녀문화 연구원의 설립)	국가는 무형유산으로서의 해녀의 권익 및 위상을 제고하고 해녀문화의 연구·전시·체험 활동 등을 위하여 <u>해녀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음(제1항)</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u>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u>	재량규정
10	안 제14조(해녀박물관의 설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을 위하여 <u>해녀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제1항)</u>	재량규정
11	안 제15조(해녀의 날 지정)	해녀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에게 해녀어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u>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함(제1항)</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의 날의 <u>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2항)</u>	의무·재량 규정
12	안 제16조(국제교류 및 홍보 촉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지닌 해녀어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녀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u> 1. 세계유산 지정 및 보전 관련 정보 수집·제공 2.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 관련 전시회 개최 등 홍보활동 지원 3.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참가 4. 그 밖에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와 관련된 국제교류 및 홍보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어업 지원·보전 및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해녀어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제1항 관련)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	(제3항 관련) • 미대상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등)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4	안 제8조(해녀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등)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수당 및 해녀 정착지원금(40세 미만 최초 해녀자격취득자)을 지급하고, 전·현직 해녀에 대해 잠항병 등 진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연도별 지급인원, 해녀수당·정착지원금 단가, 진료비 지원대상 질병 및 해당 질병의 진료비 단가 등을 구체화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자료 1] 우리나라 해녀 인원 및 지원사업 현황 참고 <최근 해녀 수 조사현황>
5	안 제9조(진료비 지원)		

(단위: 명)

조사내용	인원	기준일	비고
(가칭)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 (참여 지자체별 해녀 인원 수)	6,989	'24. 9. 20.	전북, 인천, 경기 미참여
나잠어업 신고수리 여성	7,800	'23. 12월말	
해녀 수 ¹⁾	3,713		

주: 1) 해녀 수는 별도 관리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취합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 진료비, 해녀수당,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등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음 <제주도 해녀수당 및 진료비 등 지원 사례(지방비)>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안)</th></tr><tr><td>해녀진료비지원</td><td>7,272</td><td>7,414</td><td>8,273</td><td>7,738</td></tr><tr><td>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td><td>2,580</td><td>2,591</td><td>2,420</td><td>2,510</td></tr><tr><td>고령해녀은퇴수당</td><td>1,381</td><td>1,709</td><td>3,408</td><td>4,668</td></tr><tr><td>신규해녀 초기정착금</td><td>90</td><td>121</td><td>195</td><td>204</td></tr></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제주특별자치도 해녀유산과 제출자료)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안)	해녀진료비지원	7,272	7,414	8,273	7,738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	2,580	2,591	2,420	2,510	고령해녀은퇴수당	1,381	1,709	3,408	4,668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90	121	195	204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안)																													
해녀진료비지원	7,272	7,414	8,273	7,738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	2,580	2,591	2,420	2,510																													
고령해녀은퇴수당	1,381	1,709	3,408	4,668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90	121	195	204																													
6	안 제10조(판로의 확보)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시점에서는 해녀어업 수산물의 판로확보에 대한 시책, 동시책 실시를 위한 수산발전기금에서의 보조금 규모를 구체화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7	안 제11조(해녀 양성교육 등)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시점에서는 해녀 양성교육 목표인원, 양성교육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위탁비용 등을 구체화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학교 등 지원사례는 다음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등 해녀 양성 기반 지원사례>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분</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안)</th><th>비고</th></tr><tr><td>한수폴해녀학교</td><td>80</td><td>150</td><td>150</td><td>150</td><td></td></tr><tr><td>법환해녀학교</td><td>120</td><td>120</td><td>75</td><td>150</td><td></td></tr><tr><td>해녀학교 확대</td><td>—</td><td>—</td><td>—</td><td>150</td><td></td></tr><tr><td>합계</td><td>200</td><td>270</td><td>225</td><td>450</td><td>지방비</td></tr></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제주특별자치도 해녀유산과 제출자료)	구분	2022	2023	2024	2025(안)	비고	한수폴해녀학교	80	150	150	150		법환해녀학교	120	120	75	150		해녀학교 확대	—	—	—	150		합계	200	270	225	450	지방비
구분	2022	2023	2024	2025(안)	비고																												
한수폴해녀학교	80	150	150	150																													
법환해녀학교	120	120	75	150																													
해녀학교 확대	—	—	—	150																													
합계	200	270	225	450	지방비																												
8	안 제12조(해녀어업 및 해녀문화의 계승·발전 등)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시점에서는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 및 대상 단체, 지원 여부 및 단가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해녀협회 운영비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음 <제주도해녀협회 운영비 지원사례>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분</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안)</th><th>비고</th></tr><tr><td>제주도해녀협회 운영비 지원</td><td>29</td><td>29</td><td>29</td><td>35</td><td>지방비</td></tr></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제주특별자치도 해녀유산과 제출자료)	구분	2022	2023	2024	2025(안)	비고	제주도해녀협회 운영비 지원	29	29	29	35	지방비
구분	2022	2023	2024	2025(안)	비고										
제주도해녀협회 운영비 지원	29	29	29	35	지방비										
9	안 제13조(해녀문화연구원의 설립)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녀활동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연구 규모, 연구의 범위, 운영규모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아 건립 필요성 등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을 구상 중임(기본계획수립) － 시설규모: 건물 1동(지하1층, 지상3층) ※ 건축면적: 1,200㎡, 연면적: 4,000㎡ － 시설비: 23,100백만원 － 주요내용: 해녀양성 및 국내외 교류시설, 교육장, 연구실, 해녀문화 공연장 등												
10	안 제14조(해녀박물관의 설립)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시점에서는 해녀박물관의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등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박물관’ 설립·운영중 － 개관일: 2006. 6. 9.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https://www.jeju.go.kr/haenyeo/index.htm> － 시설규모: 건물 2동 4,959㎡(지하1층, 지상3층) － 시설비: 15,000백만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현황> (단위: m², 백만원)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시설명</th><th>면적</th><th>시설비</th></tr><tr><td rowspan="5">본관</td><td>지하 1층</td><td>도서실, 세미나실, 수장고, 기계실 등</td><td>1,590</td><td rowspan="5">12,400</td></tr><tr><td>1층</td><td>영상실, 전시실, 로비 등</td><td>1,449</td></tr><tr><td>2층</td><td>전시실</td><td>643</td></tr><tr><td>3층</td><td>전망대</td><td>320</td></tr><tr><td colspan="2">소계</td><td>4,002</td></tr><tr><td colspan="2">해녀문화센터</td><td>사무실, 공연장 등</td><td>956</td><td>2,600</td></tr></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및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 운영비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안)</th><th>비고</th></tr><tr><td>박물관 운영</td><td>607</td><td>725</td><td>536</td><td>1,079</td><td>지방비</td></tr></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구분		시설명	면적	시설비	본관	지하 1층	도서실, 세미나실, 수장고, 기계실 등	1,590	12,400	1층	영상실, 전시실, 로비 등	1,449	2층	전시실	643	3층	전망대	320	소계		4,002	해녀문화센터		사무실, 공연장 등	956	2,600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안)	비고	박물관 운영	607	725	536	1,079	지방비
구분		시설명	면적	시설비																																						
본관	지하 1층	도서실, 세미나실, 수장고, 기계실 등	1,590	12,400																																						
	1층	영상실, 전시실, 로비 등	1,449																																							
	2층	전시실	643																																							
	3층	전망대	320																																							
	소계		4,002																																							
해녀문화센터		사무실, 공연장 등	956	2,600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안)	비고																																					
박물관 운영	607	725	536	1,079	지방비																																					
11	안 제15조(해녀의 날 지정)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 제주해녀축제 개최사례																																							
12	안 제16조(국제교류 및 홍보 촉진 등)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 관련 전시회 개최, 국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지점에서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해녀어업은 국가어업유산 제1호로 등재('15.12.) 되었으며, 이후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관리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으로 등재됨('23.11.10)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전통적 농어업시스템의 보전을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어·임업 유산시스템 및 관련 경관, 생물다양성 및 지식 시스템을 식별하고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지정 ※ [참고자료 2]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제주 해녀어업유산 지원 현황 참고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주해녀어업유산 개요

- 제주해녀어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15.12.21.)로 등재되었으며, 이후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23.11.10.)
 - (제주해녀어업시스템) 제주도의 해녀(海女)가 아무런 기계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전복, 소라, 미역 등의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시스템¹⁾
 - (국가중요어업유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유·무형 어업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15년부터 지정·관리
 - － (지정대상) 어업활동 시스템, 어촌경관, 어업활동의 모든 산물
 -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지속가능한 전통적 농어업 시스템의 보전을 위해 2002년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²⁾) 제도 창설
 - －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어·임업시스템의 지식체계, 문화, 생물다양성, 경관 등 5가지 등재 기준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으로 지정·관리
- ※ [참고자료 1] 우리나라 해녀 인원 및 지원사업 현황 및
[참고자료 2]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제주 해녀어업유산 지원 현황 참고

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2023.11.10.

2)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나. 해녀어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안 제5조제1항)

-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용(5년 주기)은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 (유사사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예산 설계액 300백만원(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용역비용) 추계기간 첫해인 2026년에 3억원으로 가정
- 추계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억원으로 추계됨

[표 2]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300	—	—	—	—	3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등(안 제6조)

- 해녀 및 해녀어업 현황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 (목적) 해녀어업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내용) 지역별 해녀현황, 잠수기술 전승문화, 공동체 문화, 보전 가치 문화유산 발굴 등
 - (사업주기) 2년
 - (실태조사 등 비용) 3억원/회(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추계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녀 및 해녀어업 현황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9억원으로 추계됨

[표 3] 해녀 및 해녀어업 현황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00	—	300	—	300	9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해녀의 날 지정(안 제1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의 날 기념행사,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 (유사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 날 기념식’ 추진 사례

[표 4]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 날 기념식 예산 현황: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안)
제주해녀축제	235	350	200	3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 해양수산부 의견에 따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해녀의 날의 기념행사, 교육·홍보 등에 매년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률은 각 50%로 가정(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추계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억원으로 추계됨

[표 5] 해녀의 날 기념행사 등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해녀의 날 기념행사 등	200	200	200	200	200	1,000
— 국비(50%)	100	100	100	100	100	500
— 지방비(50%)	100	100	100	100	100	5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변동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assembly.go.kr

[참고자료 1] 우리나라 해녀 인원 및 지원사업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해녀 지역별 인원수 현황

(단위: 명)

지 역	합 계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충남
해녀 수	6,989	170	584	1,269	633	911	442	2,839	141

주: 동 자료는 2024.9.20. (가칭)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전국해녀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북, 인천, 경기도 조사되지 않음)

□ 나잠어업 신고현황(해녀 포함)

(2023년 12월말 기준, 단위: 명)

지 역	나잠어업 신고수리 건수			해녀 수*	비고
	계	남	여		
계	12,448	4,648	7,800	3,713	
부산시	642	6	636	649	
경기도	6	3	3	—	
인천시	672	393	279	—	
강원도	1,465	1,130	335	—	
충남	1,863	1,055	808	141	
전남	442	157	285	—	
전북	1,136	733	403	84	
경남	1,136	644	492	—	
경북	1,270	296	974	—	
울산시	1,125	214	911	—	
제주시	2,691	17	2,674	2,839	

* 해녀 수는 별도 관리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취합

□ 시·도별 해녀 수 및 주요 지원사업 현황

※ 아래 자료는 2024.9.20. (가칭)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전국해녀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북, 인천, 경기도 조사되지 않음)

(단위: 명, 백만원)

시도	연령	2021		2022		2023		2024		주요 지원사업(2024년 기준)
		인원수	예산	인원수	예산	인원수	예산	인원수	예산	
부산	40세 미만	0		0		0		0		• 2024년 기준 - 테왁보호망 5백만원 - 잠수복 지원 100백만원 - 선진지 견학 18백만원 - 진료비지원 13.5백만원 - 조업장 진출입 시설 설치 및 보수 20백만원 - 안전모 지원 1.6백만원
	40~49세	1		0		0		1		
	50~59세	16		21		17		21		
	60~69세	141		135		104		102		
	70세 이상	497		493		515		509		
	소계	655	135	649	250.6	636	154.6	633	158.1	
울산	40세 미만	8	0.36	8	0.72	6	0.4	6	0.4	• 잠수복 구입지원 예산(70백만원/연) • 탈의장 운영비 지원 예산(19.2백만원/연)
	40~49세	35	0.36	35	0	40	2.8	40	0.8	
	50~59세	89	5.76	89	5.76	81	4.4	81	4.8	
	60~69세	306	27.36	306	27.36	295	28.8	295	33.2	
	70세 이상	471	34.92	479	34.92	489	33.2	489	36.4	
	소계	909	68.76	917	68.76	911	69.6	911	75.6	
강원	40세 미만	5	13	6	18	10	33	8	32	• 어업인 수당 지원(70만원/연) •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20만원/연) •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등 지원(15만원/연) • 여성어업인 주요질환 예방접종(17만원/연)
	40~49세	9	18	11	15	17	26	13	29	
	50~59세	21	73	26	78	26	76	29	75	
	60~69세	86	239	138	247	92	285	61	253	
	70세 이상	115	381	118	371	100	341	59	301	
	소계	236	724	299	729	245	761	170	690	

시도	연령	2021		2022		2023		2024		주요 지원사업(2024년 기준)
		인원수	예산	인원수	예산	인원수	예산	인원수	예산	
충남	40세 미만							—		- 진료비 지원 사업비 6백만원/연 *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3회/월) - 월 3회 이상은 본인부담금 중 50%만 지원
	40~49세							3		
	50~59세							14		
	60~69세							78		
	70세 이상							46		
	소계							141		
전남	40세 미만	15		21		17		21		지원사항 없음.
	40~49세	80		62		55		68		
	50~59세	128		98		119		116		
	60~69세	192		167		170		180		
	70세 이상	79		72		68		57		
	소계	494		420		429		442		
경북	40세 미만	6		9		12		16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2021년 111백만원 - 2022년 113백만원 - 2023년 130백만원 - 2024년 91백만원 * 월 20만원 한도
	40~49세	46		42		51		54		
	50~59세	131		110		113		113		
	60~69세	495		475		474		445		
	70세 이상	698		723		656		641		
	소계	1,376		1,359		1,306		1,269		
경남	40세 미만	35	1.3	37	1.6	29	2.49	31	2.55	(경남)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110백만원) (통영) 잠수복 지원 사업 (1인 약39만원) (거제) 잠수복 지원 사업 (1인 21만원) (사천) 잠수복 지원 사업 * 21년 29.4만원, 23년 39.2만원 (남해) 잠수복 지원 사업 * 1인 보조 25만원 자담 25만원
	40~49세	61	2.97	64	2.12	66	2.54	63	6.09	
	50~59세	109	12.01	82	8.88	72	5.55	75	7.76	
	60~69세	254	42.05	272	40.31	256	48.71	267	50.7	
	70세 이상	115	15.63	131	8.28	228	17.72	148	16.2	
	소계	574	73.96	586	61.19	651	77.01	584	83.3	

시도	연령	2021		2022		2023		2024		주요 지원사업(2024년 기준)
		인원수	예산	인원수	예산	인원수	예산	인원수	예산	
제주	40세 미만							33		• 2024년 기준 -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 (2,146명, 2,510백만원) * 70세 이상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 -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634명, 3,408백만원) * 75세 이상, 월 50만원/3년간) -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 (28명, 195백만원) * 40세미만, 월 50만원/3년간) - 해녀 진료비 지원 (8,119명, 8,273백만원) * 전현직 해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 급여대상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단, 초음파 검사비용, 약제비, 수술비 제외)
	40~49세							66		
	50~59세							175		
	60~69세							854		
	70세 이상							1,711		
	소계							2,839		
합 계								6,989		

주: 동 자료는 2024.9.20. (가칭)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전국 해녀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북, 인천, 경기도 조사되지 않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각 시·도 제출자료 취합)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해녀어업 관련 지원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해녀복지증진	해녀진료비지원	전현직대상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6,868	6,868	7,272	7,268	7,414	6,984	8,273	—	7,738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	만70세이상 월10만원 만80세이상 월 20만원	2,580	2,389	2,591	2,439	2,420	2,340	2,510	—	2,510
	유색해녀복지원	유색 해녀복 또는 잠수장비 지원 (38만원/인)	973	905	903	846	1,209	906	774	—	1,102
	해녀태와보호망지원	유색 해녀 태와 보호망 지원	30	30	30	30	30	29	28	—	
	신규해녀초기정착금 지원	만40세미만 신규해녀 대상 50만원(3년간)	75	68	90	80	121	111	195	—	204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만60세미만 신규 해녀 대상 1백만원	19	19	29	28	19	15	23	—	40
	고령해녀은퇴수당	만75세 현업 고령해녀 중 은퇴를 희망하는자 에 50만원(3년간)	1,230	1,116	1,381	1,232	1,709	1,709	3,408	—	4,668
	어업인안전보험가입비 지원	현직해녀 대상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60	52	60	56	54	54	118	—	
	도 해녀협회 운영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직원 인건비 등 조직 운영 경비 지원	28	28	29	29	29	29	29	—	35
	제주해녀 건강증진 및 안전교육	해녀어업인 안전 사고 예방 교육	—	—	—	—	30	30	21	—	30
소계			11,863	11,475	12,385	12,008	13,035	12,207	15,379	0	16,327
소득지원	수산종자매입방류	해녀 소득 품종(오분자기, 전복, 홍해삼) 매입 및 방류 등	1,056	1,029	2,100	2,085	2,100	2,019	2,100	—	2,100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자원 조성 (80개소 내외)									
	마을어장경영평가우 수어촌계지원	마을어업 경영평가를 통한 인 센티브 지원 (4개소 내외)	116	111	122	115	120	113	72	—	72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자율관리공동체 국내교류 및 워크숍 지원	7	8	7	7	37	37	27	—	35
	패조류투석	패조류 투석을 통한 마을어장 내 서식장 조성	1,500		1,500		1,500		1,500	—	1,500
	해조류 PP마대 지 원	해조류 pp마대 지원	19		20		20		20	—	7
	고부가가치 해조장 조성	고부가가치 해조장 조성 7개 소	—	—	—	—	—	—	1,120	—	2,348
	마을어장복원(시비 재살포)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 1식	110		854		1,000	1,000	940	—	1,050
	소라가격안정지원	소라 1kg당 1,000원 지원	1,879	1,879	1,721	1,716	1,817	1,777	1,819	—	1,788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원	국유지내 수산시설(해녀탈의 장, 작업장, 창고) 대부료 지원	—	—	30	11	25	16	30	—	30
	제주소라 관측 및 소비촉진 행사	소라관측을 위한 행사운영비 지원	29	21	21	21	18	18	15	—	20
	소라 TAC 전수조사	도내 어촌계 생산실적 전수조 사	13	13	13	13	13	13	13	—	20
	소라 홍보 및 마케 팅 지원	국내외 소라 홍보마케팅 지원	—	—	170	170	400	400	—	—	—
	소 계		4,729	3,061	6,558	4,138	7,050	5,393	7,656	0	8,970
작업환경개선	해녀탈의장운영 지 원	해녀탈의장 운영을 위한 관리 비 지원	156		156		185		185		222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해녀탈의장 보수	노후 해녀탈의장 개보수 지원	170		159		87		14		-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어업 기반시설(해녀탈의장, 공동작업장 등)개선	360		360		360		270		630
	성계껍질 분할기 지원	성계껍질 분할기 구입지원	55		55		60		60		49
	어장진입로 정비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256		310		440		340		
	해녀공동작업장 보수	노후 공동작업장 개보수 지원	44		94		58		-		-
	안전조업장비 지원	해녀 안전조업을 위한 장비 지원	35		35		20		-		-
	해양생태환경(마을 어장 갯따기)	갯따기 장비 및 어촌계원 인력 동원에 따른 공동기금 지원	-	-	300	221	241	235	-	-	-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스마트워치 보급으로 해녀 안전사고 예방	-	-	100	100	-	-	200	-	300
	소 계		1,076		1,569		1,451		1,069		1,201
문화전승	제주해녀축제 지원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날 기념식	123	123	240	240	350	346	200	-	300
	제주해녀축제 수산물 홍보 지원	해녀축제 연계 제주수산물 홍보									
	출향해녀 고향 방문	전국출향해녀와의 교류활동 지원	-	-	30	30	30	30	15	-	30
	해녀학교운영비지원 등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해녀학교 강사료, 장비 등 교육과정 운영 경비 지원	210	210	200	200	270	270	225	-	450
	제주해녀문화 콘텐츠	해녀문화 전승을 위한 콘텐츠	40	40	40	40	40	40	28	-	50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츠 보급	제작, 기록 및 홍보									
	해녀공연운영지원	해녀문화 보전을 위한 해녀공연팀 육성 및 해녀공연 지원	180	180	212	212	338	338	246	—	500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제주해녀 문화 보전·전승 교육	40	40	40	40	30	29	24	—	40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운영	해녀문화 활용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자원화	—	—	—	—	30	30	100	—	330
	해녀박물관 노후시설 정비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153	142	50	49	130	125	50	—	130
	독도 출항해녀 기록물 수집 및 DB화	독도출항 역사기록 및 자료조사					50	50	50	—	—
	제주해녀 해외홍보 교류지원	제주해녀관련 홍보영상제작 및 교류공연	—	—	—	—	100	90	70	—	70
	해녀어업 문화복원 정비	해녀문화시설 복원·정비	70	70	70	70	63	63	42	—	42
	제주해녀 국내외 프로모션	해외주재 한국문화원 등과 공동 해외 전시·공연	50	50	160	160	100	100	60	—	160
	제주해녀굿지원	제주해녀의 대표적 공동체문화인 해녀굿 신앙 보전 및 지원	80	78	80	76	80	80	80	—	100
	제주해녀문화 전국 방송 제작	해녀문화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한 전국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록 및 홍보	50	50	130	130	150	150	105	—	140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비	제주해녀 항일운동 정신의 역사적 가치 기록 및 기념행사 지원	20	20	123	123	47	47	40	—	40
	신규해녀 역량강화	신규해녀 공동체문화 활성화	10	—	10	10	30	10	30	—	100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사업	포럼,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주해녀 대백과 편찬사업	제주해녀문화 집대성 및 기초 자료 구축	-	-	-	-	200	200	100	-	-
	제주해녀유산 네트워킹 활성화	전국단위 해녀협회 설립 및 교류강화	-	-	-	-	-	-	100	-	100
	해녀설화 전집 창작	제주해녀설화 문화보존자료화	-	-	-	-	50	50	-	-	-
	제주해녀일대기기록	고령해녀 100명의 생애사 기록	-	-	-	-	80	70	-	-	-
	해녀문화예술지역특성화 지원	지역별 특성화된 제주해녀문화와 예술을 연계한 창작 공연 등 활동 지원	460	460	460	460	460	460	-	-	200
	소 계		1,486	1,463	1,845	1,840	2,628	2,578	1,565	0	2,782
	합계		19,154	15,999	22,357	18,307	24,164	20,413	25,669	0	29,28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제주특별자치도 해녀유산과 제출자료)

□ 부산광역시 해녀어업 관련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지원금액	135	250.6	154.6	158.1
지원사업	○ 테왁보호망 5백만원 ○ 잠수복 지원 97백만원 ○ 진료비 지원 13백만원 ○ 조업장 진출입 시설 설치 및 보수 20백만원	○ 테왁보호망 5백만원 ○ 잠수복 지원 56백만원 ○ 복지시설 140백만원 ○ 진료비 지원 20백만원 ○ 조업장 진출입 시설 설치 및 보수 20백만원 ○ 선진지 견학 8백만원 ○ 안전모 지원 1.6백만원	○ 테왁보호망 5백만원 ○ 잠수복 지원 100백만원 ○ 선진지 견학 18백만원 ○ 진료비 지원 10백만원 ○ 조업장 진출입 시설 설치 및 보수 20백만원 ○ 안전모 지원 1.6백만원	○ 테왁보호망 5백만원 ○ 잠수복 지원 100백만원 ○ 선진지 견학 18백만원 ○ 진료비지원 13.5백만원 ○ 조업장 진출입 시설 설치 및 보수 20백만원 ○ 안전모 지원 1.6백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제출자료)

[참고자료 2]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제주 해녀어업유산 지원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유·무형 어업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15년부터 지정·관리
 - (근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의 조속한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
 - (지정대상) 어업활동 시스템, 어촌경관, 어업활동의 모든 산물
 - (선정기준) 어업유산의 특징(식량생산 및 생계유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지식체계, 전통문화, 경관형성, 역사성),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참여와 협력
 - (지정절차) 공모신청, 심사(서류, 현장, 최종평가), 지정통보
 - (특징) 전통 어업과 그로 인해 형성된 문화의 진화·발전·활용을 통해 후세에 전승하는 보전'에 중점을 두며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유산
- 제주해녀어업
 -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15.12.21.)로 등재
 - －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관리('16~'18년, 3년)
 - －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18, '23년)
 - －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사업으로 제주해녀축제 개최('23)
 -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23.11.10.)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목록 현황 및 (국비) 교부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백만원)

어업유산 지정번호	명칭	지정일	지정범위	주요 특징	사업명	예산 지원현황
제1호 (2015년) * FAO 세계중요 농업유산등재 (‘23.11.10)	제주 해녀어업	’15.12.21.	제주도 전역 (14,346ha)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해산물을 직접적으 로 채취하는 전통적 어업방식으로 불턱, 해신당 등 세계적으로 희귀 하고 독특한 문화적 가치 존재	합계	903
					2016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1년차)	70
					2017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2년차)	210
					2018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3년차)	210
					2018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133
					2023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140
					2023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	140
제2호 (2015년)	보성 빨배어업	’15.12.21.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일대(35km ²)	얕으면 매우 깊게 빠지는 아주 미 세한 갯벌 진흙 특성 때문에 꼬막 채취를 위한 유일한 어업활동 이 동 수단	합계	540
					2016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1년차)	70
					2017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2년차)	210
					2018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3년차)	210
					2023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관리	50
제3호 (2015년)	남해 죽방렴	’15.12.21	경남 남해군 삼동/ 창선면 지죽해염 일 원(537.2ha, 죽방렴 23개소)	삼국시대 이래 현재까지 어업인 생계수단으로써 자립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한반도 유일의 함정어 구를 사용한 어로방식으로, 자연 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대표적 인 전통적 어업시스템	합 계	730
					2016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1년차)	70
					2017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2년차)	210
					2018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3년차)	210
					2022 세계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100
					2023 세계농어업유산 등재추진	140

어업유산 지정번호	명칭	지정일	지정범위	주요 특징	사업명	예산 지원현황
제4호 (2016년)	신안 갯벌 천일염업	'16.10.31.	전남 신안군 천일염 전 일대(29.7km ²)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 들여 전 통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바람 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 금을 생산하는 전통어업활동시스 템	합 계	540
					2017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1년차)	70
					2018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2년차)	210
					2019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3년차)	210
					2023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관리	50
제5호 (2017년)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17.12.1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룡리, 가교리, 봉 명리 일대의 지주식 김 양식장(358ha)	얕은 수심과 큰 조수간만의 차 등 양식 어장의 특성을 이용해 김을 자연 햇볕에 일정시간 노출을 반 복하면서 생산하는 친환경 전통적 김 양식어업	합 계	540
					2018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1년차)	70
					2019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2년차)	210
					2020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3년차)	210
					2023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관리	50
제6호 (2018년)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18.11.30.	전남 무안 탄도 및 신안 선도 일대 갯벌 (118.35km ²)	낙지의 생태를 파악하여 재빠르게 맨손으로 포획하는 전통 낙지잡이 어법	합 계	540
					2019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1년차)	70
					2020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2년차)	210
					2021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3년차)	210
제7호 (2018년) * FAO 세계중요 농업유산등재 ('23.11.10)	하동·광양 재첩잡이 손틀어업	'18.11.30.	경남 하동군, 전남 광양시 섬진강 하류 일원(140ha)	서식환경이 잘 보존된 기수역에서 거랭이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재 첩을 채취하는 어법	합 계	630
					2019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1년차)	70
					2020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2년차)	210
					2021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3년차)	210
제8호 (2020년)	통영·거제 돌미역 뜯잇대 채취어업	'20.07.06.	경남통영·거제시 견 내량 해협 일원 (63.6ha)	서식환경이 잘 보존되고 빠른 유 속과 깨끗한 수질의 견내량 수역 에서 자란 미역을 트릿대(도구)를 이용하여 채취하는 전통어업	합 계	490
					2020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1년차)	70
					2021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2년차)	210
					2022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3년차)	210

어업유산 지정번호	명칭	지정일	지정범위	주요 특징	사업명	예산 지원현황
제9호 (2021년)	울진·울릉 돌곽 때배 채취어업	'21.03.08.	경북 울진·울릉 돌 곽 채취 구역 (39.79km ²),	오동나무 등을 뗏목처럼 엮어 만 든 배로 돌곽(돌미역)을 채취하는 어업	합 계	490
					2021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1년차)	70
					2022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2년차)	210
					2023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3년차)	210
제10호 (2021년)	부안 곰소 천일염업	'21.09.02.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일대 (5.4km ²)	햇빛과 바람을 이용 자연방식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 하는 어업	합 계	490
					2021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1년차)	70
					2022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2년차)	210
					2023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3년차)	210
제11호 (2021년)	신안 흑산 홍어잡이 어업	'21.09.03.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일대 연근해어장 (6,901.4km ²)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주낙을 홍 어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잡 는 어업	합 계	490
					2023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1년차)	70
					2023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2년차)	210
					2024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3년차)	210
제12호 (2022년)	경남 거제 숭어 망쟁이 들망어업	'22.8.16.	거제시 6개 어촌계 (도장포, 양화, 학동, 선창, 다포, 다대) (69,340m ²)	망쟁이가 숭어 떼의 이동 흐름을 읽고, 들망을 이용해 숭어 떼를 가 두어 잡는 전통어업	합 계	280
					2023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1년차)	70
					2024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2년차)	210
제13호 (2023년)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	23.11.2.	진도군 조도군도, 신 안군 흑산군도 마을별 제1종 공동 어장(250km ²)	원시어업 형태로 미역을 밭에서 경작하는 작물로 취급하여 미역밭 갯닦기와 물주기 등 서식지 관리 로 미역을 채취하는 어업	합 계	70
					2024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관리(1년차)	70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최근 5년간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해녀어업 지원 예결산 현황: 2021~2025년(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어촌활력기반구축 (3347-300)	* '24년도부터 세부사업명 변경 (어촌활력기반구축 → 어촌소멸대응지원)									
○ 어촌관광 활성화 (내역사업)	소멸위기인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촌유입인구 확대 및 소득다변화를 통한 어 촌공동체의 자생력 강화 지원	8,332	8,631	10,272	10,322	9,945	9,845	4,271	-	3,359.5
- 국가어업유산 지정관리 (내내역사업)	어촌고유문화를 발굴·보존하고, 관련 콘텐 츠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가 소 득증대 도모 - (내내내역사업) 유네스코 해녀유산(해녀탈 의장 개보수('22수립)1800백만원(사업이 월2회) '24년 완료예정) 사업 포함 - (내내내역사업) 어업유산 보전활용('23년 수립) 제주해녀축제 140백만원, 제주해녀 어업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140백만원) 포함	710	710	2,650	2650	1,840	1840	525	-	725
합계		9,042	9,341	12,922	12,972	11,785	11,685	4,796	-	4,084.5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